

부산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55050 판결 [구상금등 청구]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5505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208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이진석

피고, 피항소인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변론 종결2019. 11. 28.

판결 선고2020. 1. 16.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208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946,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약관의 무효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관은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확정판결 등에 따라 조합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위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조합원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한 후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고객인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2) 판단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편입된 것으로서,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약관상의 지급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인 이상, 피보험자로서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급하게 서면합의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액은 보험자에게 소송을 해서 받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보험약관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인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확대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유족들은 원고에게 장례절차 전에 위로금 및 장례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 대행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6. 10. 21. 유족 측에 위로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유족 측이 장례비용의 완납을 요구하여 장례절차는 지체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울산지부 지부장으로서 장례비용의 증가로 인해 피고 측이 부담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 측에 이 사건 장례비용과 시체안치비용을 대납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대납한 돈은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하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이라는 의미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와의 공제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장례 지체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법원의 손해배상실무상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등의 관련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비용에 따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의 돈만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망인의 유족 측이 피고를 상대로 장례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금액은 이 사건 약관에서 지급기준으로 정한 300만 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돈이 피고의 손해확대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효관

판사김정우

판사조지희